

第32回  
(閉會中)

#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11月25日(木) 10時07分  
場 所 小會議室

### 議事日程

1. 第33回鍾路區議會定期會開議時協議의件
2. 第33回鍾路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
3. '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 審査된 案件

1. 第33回鍾路區議會定期會開議時協議의件(議長提議) ..... 1面
2. 第33回鍾路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提議) ..... 1面
3. '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委員長提議) ..... 4面

(10時07分 開議)

○委員長 李萬魯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 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鍾路區議會 臨時會 閉會中 제1차 運營委員會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랫만에 이렇게 운영위원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경 동성구인민위원회에서 방문하셨을때 議員님 여러분이 다 협조를 잘해 주셔서 그 양반들이 종로에 방문한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고 공항까지 환송을 해주시고 하셔서 그야말로 가는 時間까지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議案係長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案係長 林星圭 議案係長 林星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회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閉會中 제1차 運營委員會 會議는 地方自治法 제56조의 規程에 의거 종로구의회 議長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3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議長으로부터 제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기회 개의시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

으며 '93년 11월 25일 운영위원회 委員長과 幹事가 협의 작성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以上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萬魯 의안제장 수고하셨습니다.

1. 第33回鍾路區議會開議時協議의件(議長提議)
2. 第33回鍾路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協議의件(議長提議)

○委員長 李萬魯 議事日程 제1항 제33회 종로구의회개회시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3회 종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로구의회 議長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3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개의시 및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議事日程 내역은 '93년 11월 25일(목) 11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 本會議를 개의하여 '93년 12월 24일 閉會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2월12일 (일)	공 휴 일	
12월13일 (월) ↓ 12월18일 (토)	휴 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1. '92년도결산 승인(안) 2.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94년도예산 안
12월19일 (일)	공 휴 일	
12월20일 (월)	1. '92년도 결산승인(안) 2.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3. 94년도 예산(안) ※휴회결의(3인간)	○ 제5차 본회의
12월21일 (화) ↓ 12월23일 (목)	휴 회	○ 상임위원회 활동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12월24일 (금)	1. 운영위원회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시민행정위원회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도시건설위원회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폐 회	○ 제6차 본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93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는 12월 24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위원회(안)을 확정하여 '93년 11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3항 및 제1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실시 3일전까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에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현지 확인, 서류제출 요구, 관제인의 출석 요구, 증인이나 의견진술 요구 및 기타 사항을 포함하여 委員長과 幹事가 협의 작성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임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네. 洪承台委員 질의하세요.

○洪承台委員 12월 3일서부터 12월 4일 이틀간 구정질문이, 이틀 간이에요?

○委員長 李萬魯 네. 그렇습니다.

○洪承台委員 거기까지 구정질문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萬魯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이 있음)

네. 羅在岩委員 토론하세요.

○羅在岩委員 지금 감사계획서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지금 물론 우리 21名 委員이 각각 감사계획을 갖고 있겠지만은 좀더 심층있고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들한테 행정감사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을 알려져 많은 분들

1. '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委員長提議)

(10時12分)

○委員長 李萬魯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이 참여하는 폭이 넓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악되는 사항도 제 자신도 좀 우리 스스로 우리 운영위원 안에서 자유토론으로 공개없이 사전에 한번 해볼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萬魯 다른 委員 토론없으십니까?

(「委員長!」하는 이 많음)

네. 鄭鍾九委員! 토론하세요.

○鄭鍾九委員 鄭鍾九委員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께서 적시에 필요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왜냐 하면 지금 3번째 하는 행정감사라고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1년 그냥 지나가고 2년 작년에 사실 뭐 좀 해본다고 해가지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또 그냥 지나갔고 이번에 3번째 남았는데 아직도 모든게 미숙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그래도 수십 년동안 관직에 계시는 공무원이고 하니까 자료를 이런 시민행정, 도시건설,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에서 하니까 그렇고 어쨌거나 전문위원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李萬魯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들께 잠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記錄中止 10時20分)

(記錄開始 10時25分)

○委員長 李萬魯 다시 會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면 감사일정은 2일날 오후 3시로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좀 늦게 하지요. 너무 일찍 하는거 아닙니까? 3시 정도로...

○委員長 李萬魯 다른 분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案)**

1993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 사무감사계획서(안)

의안 번호 228 제안일: 1993. 11. 25 제안자: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영 위원 회

1. 제안이유

○종로구의회 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1994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국 운영 도모

2. 주요골자

○감사기간: 1993.12.2(1일간)

○감사대상기관: 종로구의회 사무국

○감사반의편성: 이만로위원의 8인으로 편성

○감사일정: 1993.12.2-종로구의회 사무국

○감사장소: 종로구의회 소회의실

3. 승인(안): 별첨

4.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案)**

1. 監査의 目的

○종로구의회 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1994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국 운영 도모

- 2. 監査期間：1993.12.2(1일간)
- 3. 監査實施對象機關：종로구의회 사무국
- 4. 監査班 編成
  - 위 원 장：이만로
  - 감 사：정종구
  - 감사위원：현효선, 심재득, 이형술, 홍승태, 나재암, 정창희, 전영태
- 5. 監査日程 및 場所
  - 감사일시：1993.12.2
  - 감사장소：종로구의회 소회의실
- 6. 監査方法
  - 가. 감사방법
    -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 현지확인 또는 보고, 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
  - 나. 주요 감사내용
    - 1993년도 예산집행 사항
    - 의안처리현황 및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
    - 회의록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정활동 지원사항
    -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감사진행순서
    - 개회선포 및 위원장 인사
    - 의사일정 상정
    - 간부소개 및 선서
    - 업무현황 청취
    - 보고 및 질의 답변
    - 감사종료 선언
  - 라. 감사자료 및 관계인의 출석요구
    - 보고요구
      - 보고사항：업무현황
      - 보고일시：1993.12.2
      - 보고장소：감사장
    - 서류(자료)제출요구
      - 서류(자료)제출 요구사항：별도 목록에 의함
      - 제출일시：1993.11.29
      - 제출장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사무국
      - 제출부수：20부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출석일시：1993.12.2
      - 출석공무원：사무국장
      - 출석장소：감사장

- 7. 監査의 限界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간여 금지
  -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에 따른 취득사항 누설 금지
- 8. 行政監査
  - 가. 보고·서류의 제출 요구
    - 보고·서류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 확정후 각 감사위원의 요구사항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정리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위원장은 의결을 거친 보고·서류의 제출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요구(늦어도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
  - 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사무국장
  - 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확정
    - 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
      -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 감사실시내용
      - 감사결과 처리의견：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 기타 특기사항 및 중요 근거서류

---

○出席委員 8名

李 萬 魯	鄭 鍾 九	沈 載 得
李 炯 述	洪 承 台	羅 在 岩
丁 昌 熙	田 永 泰	

